

「고양시청소년재단」 선임직 임원(비상임) 공개모집 공고

고양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양시청소년재단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유능한 선임직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 10. 29.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모집인원 : 총 3명(선임직 이사 2명 / 선임직 감사 1명)

구분	공모분야	자격조건	인원	임기
선임직 임원	선임직 이사	- 청소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 청소년시설 및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자 중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	임명일 ~ 2년
	선임직 감사	- 회계 또는 법률에 지식이 있는 회계사나 변호사	1명	

2. 직무수행 요건

□ 담당직무

구분	직무	내용
선임직 이사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선임직 감사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 등 재단의 업무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감사

□ 직무수행 능력요건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크게요구
② 리더십	크게요구
③ 청소년기관 운영 능력	크게요구
④ 전문성	크게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크게요구
⑧ 청렴도	크게요구
⑨ 도덕성	크게요구
⑩ 준법성	크게요구

□ 결격사유

-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제17조 및 임원인사규정 제8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임원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영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신분 및 임기 등

- 신분 : 재단 선임직 임원(비상임 이사, 비상임 감사)
- 임기 : 임명일로부터 2년
- 보수 : 무보수(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참석수당 등 지급)

4. 지원서 접수

- 지원자가 수가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미달일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7일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10. 29.(금) ~ 2021. 11. 15.(월) 18:00까지
 - ※ 근무시간 內(09:00~18:00)이며,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 이메일 . FAX접수
 - ※ 2021. 11. 15.(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방문·우편 : (105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5,
토당청소년수련관 2층 재단사무국
 - 이메일: jaeshin73@naver.com / FAX : 031-995-4119

5. 제출서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지원서 1부	- 소정양식(사진 부착)
자기소개서 1부	- 소정양식(A4용지 3매 이내) - 지원자의 지원동기 및 경력, 업적 등
최종학력증명서 1부(학사 이상)	- 최종학력이 대학원 수료 이상일 경우 학사 이상 전부제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각 1부	- 원본제출
관련자격증 사본 각 1부	-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소정양식
기타 관련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수상·상훈·논문·연구 등 증빙서류 사본

6.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임명절차

- 임원 후보자 **2배수 이상** 추천(임원추천위원회) → 최종 **대상자** 결정(재단 이사장)
- 임원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 임명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 2021. 11. 30.(화)

※ 추진상황 및 재단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 조회 등 결격사유로 판명된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지원자격 미 충족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최초 공개모집에서 지원자 수가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할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 및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원추천위원회(☎ 031-995-4103)로 연락바랍니다.

[제출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전자우편 제출 및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재단 채용공모에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단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출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제출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제출서류 반환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31-995-4119) 또는 이메일(jaeshin73@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접수여부 확인 필수 ☎031-995-4119)
4. 재단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청소년재단 귀중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